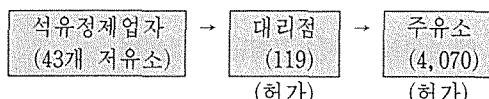


주유소 상표 표시제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 —

I. 석유유통구조 및 공급자표시 현황

1. 석유제품(輕質油) 유통체계



—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허가(대리점, 주유소) 또는 신고(부판점)하여야 함(석유사업법 제12조).

— 허가대상(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 대리점(용제를 제외한 모든 제품 판매) : 시·도지사 허가
- 주유소(휘발유, 등·경유취급)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2. 주유소의 공급자표시 현황

가. 공급자표시제(pole sign)의 정의

- 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등을 표시한 경우 그 석유정제업자가 공급한 석유제품만 판매토록 하는 제도임.
- 공급자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는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거나 광고하고(풀·사인, 주유소 벽면, 주유기 표시광고등 일체를 포함) 해당석유정제업자 이외의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키는 행위임.

〈参考〉 외국의例

— 외국의 경우 상표사용계약이나 상관행으로 확립되고 있음.

	日 本	美 國	英 國
주유소관리제도	등록제(揮發油) 신고제(燈·輕油)	자유화	자유화
주유소수 제열화	58,411('88年) 99%(상표사용계약)	112,000('88年) 75%(Brand계약)	20,197('87年) 99%(Brand계약)

나. 석유정제업자 시장점유율 및 공급자표시 현황

— 석유판매업소(대리점 또는 주유소) 허가시 석유정제업자 및 대리점과의 제품공급계약 체결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음(석유사업법시행령 第2條, 시행규칙 제8조).

◦ 공급계약기간은 '81. 8. 24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베타적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에 따라 1년이내로 제품공급계약 체결.

- 대리점 또는 주유소에서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판매업소에 표시(pole sign 등)하고 있으나, 직영주유소를 제외한 자영주유소는 실제판매하는 제품과 상이한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풀사인은 단순한 광고판 역할을 하고 있

는 설정임.

- 복수거래하는 주유소가 30~40%에 이를
○ 직영주유소는 전체주유소의 22%(896개)임.

II.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

1. 제정이유

- 주유소등이 그 영업장소에 표시·광고된 상표 또는 상호와 동일한 석유정제업자(통칭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다수의 주유소등이 복수거래를 하는 등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혼합 또는 교체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설정임.
 - 따라서 이러한 석유유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를 도모함과 아울러同一부문에서 석유정제업자간의 제품차별화등 가격 및 품질경쟁을 촉진하고同一경쟁의 효과를 소비자에게까지 파급시키고자 함.
 - 아울러 판매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의 책임한계를明確히하기위함.
- ※ 외국(美國, 日本, 유럽)의 경우 상표사용계약에 의해 공급자상표표시제도가 확립되어 있음.

2. 법적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23條 第1項 第6號에 해당하는 주유소의 표시·광고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을 同法 제2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여 지정 고시함.
〈同法第23條〉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5號 생략)

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同法 시행령 第36條〉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法 第23條 제2項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특정 사업분야 또는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모든 사업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하고,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특정한 사업분야에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하며,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경품류제공, 할인특별판매행위 기타 특정한 거래행위에 수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

3. 주요골자

가. 표시·광고의 적용범위를 설정함(第2條)

- 소비자가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폴·사인, 주유기, 유조차등 운반용구 및 영업장소의 벽면등에 석유정제업자의 상표·상호 및 상징표시등(이하 “상표”라 한다)을 표시·광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대상으로 함.

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함(第3條)

- 주유소,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포함) 및 그 직영점 또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함.

다. 적용대상 석유제품은 주유소 취급유종인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상으로 함(第4條)

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광

고의 유형을 지정함(第5條)

1)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例示〉

가) A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하고 이와 다른 석유정제업자(B 또는 C 등)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나) A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하고 둘 이상의 석유정제업자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행위

2)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

· 광고하는 행위

〈例示〉

가) A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하고 이와 다른 석유정제업자(B 또는 C 등)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나) 둘이상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각각 석유정제업자 제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교체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3) 하나의 영업장소에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例示〉

가) 하나의 영업장소에 둘이상의 석유정제업자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나) 폴사인은 A 석유정제업자, 주유기에는 B 석유정제업자등 서로다른 석유정제업자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4) 석유정제업자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공급받거나 외국석유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자기제품의 품질수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기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例示〉

가) A 석유정제업자가 B 석유정제업자제품을 공급받아 공표된 자기의 제품특성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나) A 석유정제업자가 외국석유제품을 수입하여 공표된 자기의 제품특성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5) 기타 실제판매하는 석유제품과 다른 상표를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마. 고시 시행일자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유통업계의 상표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92. 4. 1부터 시행하되 업계의 사전준비를 위해 3개월의 지도계몽기간을 부여하고 '92. 7. 1부터 위반업체를 단속함.

바. 동력자원부 소관사항

-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상표표시제 시행에 따라 주유소등은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92. 2. 29까지 관할허가관청에同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행정지도 할 것임.

- 석유정제업자는 자기의 제품공급 주유소에 자사의 석유제품 품질표시를 게시하도록 지도할 것임.

□公正去來委員會告示(第92-1號)□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23條 第2項 및 동법 시행령 第36條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1992年 1月 日
公正去來委員會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第1條(목적) 이 고시는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자가 자기의 영업장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자에 관한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23條 第1項 第6號의 규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표시·광고의 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대상 행위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정제업자의 상표·상

호, 서비스마크 또는 기타 당해 상품을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징표시(이하 “상표”라 한다)를 풀사인, 주유기, 유조차등 운반용구 및 기타 영업장소의 벽면등에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第3條(적용대상사업자) 이 고시의 적용대상사업자는 주유소,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직영점 또는 대리점으로 한다.

第4條(적용대상 석유제품) 이 고시의 적용대상 석유제품은 휘발유·경유·등유로 한다.

第5條(부당한 표시광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2. 서로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3. 하나님의 영업장소에 서로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4. 석유정제업자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공급받거나 외국석유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자기제품의 품질수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기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5. 기타 실제판매하는 석유제품과 다른 상표를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附 則

이 고시는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参考〉 문답식 해설

〈문 1〉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 표시에 관한 특정고시를 제정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답〉

○ 주유소등에 있어서 허위 기만적인 공급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第8條(不當한 표시·광고)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다

○ 관행으로 굳어온 부당한 공급자 상표표시 행태를 바로 잡도록 사전계도하고 규제되는 상표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유형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정고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문 2〉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 공급자 표시제도를 시행할 필요는 무엇인가?

〈답〉

○ 예전에는 정부가 油價 고시제도를 채택하고 정유사별로 제품차이가 없었을 뿐만아니라 수급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유소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급자 상표표시행위가 묵인되었음.

○ 그러나 '91. 8 유가자유화, 주유소거리제한 완화 등 유통여건 개선에 따른 정유사간의 품질 및 가격경쟁의 효과가 소비자에게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하고

○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표표시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91년도 경제행정규제 완화추진과제인 석유산업의 경쟁촉진 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91. 7월에 이미 92년 상반기중 시행하기로 공표된 사항임.

〈문 3〉

석유정제업자의 교환·수입판매는 허용하면서 주유소의 혼합·교체판매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 석유정제업자간의 교환판매가 현재와 같이 타 회사제품 그대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별 저유시설의 편재등으로 수송비 증가가 예상되어 석유정제업자간의 제품교환을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자기제품의 품질수준으로 가공하여 공급하여야 함. 만약 자기제품의 품질수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공급하면서 자기상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도 처벌됨.

○ 주유소의 경우에도 혼합·교체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임.

〈문 4〉

주유소가 반드시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하여야 하는가?

〈답〉

- 석유제품도 일반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제조원을 표시하여야 하나 유종별 품질이 석유사업법에 의해 규제되므로 본고시에서는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음.
- 따라서 주유소는 공급자 상표를 표시하지 않고 자기고유의 상호사용이 가능함.

例) 서울주유소, 京畿주유소 등

〈문 5〉

복수상표 표시는 허용되는지?

〈답〉

- 하나의 영업장소에 둘이상의 석유정제업자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됨.
-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유기, 폴사인, 벽면 등에 각기 다른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는 소비자를 기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대상에 해당함.

〈문 6〉

제품공급계약기간은 연장할 방침인가?

〈답〉

- 현재 주유소에 대한 공급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

2조 규정에 따른 제품공급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81. 8 당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의해 계약기간은 종전 10년에서 1년으로 조정되어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음.

- 계약기간에 대해 주유소측은 1년 유지를 주장하고 동자부 및 정유사는 2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 이 문제는 本 고시제정과는 별도로 정유사·주유소간의 거래행태와 석유유통시장의 경쟁 상황을 검토후 결정할 사항임.

〈문 7〉

석유판매업에 있어서 공급자 표시제를 '92. 4. 1일부터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답〉

- 당초 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석유산업 경쟁촉진 방안에서 '92年 상반기중 시행하는 방안을 이미 채택하였음.
- 따라서 공급자 상표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92. 4. 1일부터 시행하되 업계의 사전준비를 위해 3개월 동안의 지도계동 기간을 부여하고 '92. 7. 1부터 위반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할 계획임.

〈해외동향〉

중국 대규모 가스油田 발견

홍콩에 있는 中國系신문(文匯報와 大會報)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남해서부해역에서 약 1천억m³정도의 대규모 해저 천연가스田이 발견됐으며, 가스매장이 추정되는 東해안(黃海)해역에서도 대외에 개방, 가스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곳은 鶯歌海崖 13-1 가스田으로 이미 개발에 착수, 오는 96년부터 연간 32억m³의 가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 해역에는 다수의 가스전에 대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연간 1백억m³의 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생산천연가스를 해저가스관을 통해 홍콩으로 수송하는 문제를 홍콩 중화전력공사

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국은 미국과 합資하여 장장 8백km에 달하는 해저 가스管을 부설할 계획이며, 연간 27억m³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NCC

나프타분해센터의 약칭으로, 정유회사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나프타를 사용해서 기초유분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공업의 기초이자 가장 핵심적인 공장이다. 현재 투자자율화이후 기존업체에 신규업체가 참여해 석유화학제품 공급과잉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